

[기능] 공통
[규정] 이사회 규정
[규칙]
[지침]

이사회 규정 (AD000-02)

목 차

제 1 장 총 칙

- 제 1 조 (목 적)
- 제 2 조 (적용범위)
- 제 3 조 (직무와 권한)
- 제 4 조 (구 성)
- 제 5 조 (의 장)
- 제 6 조 (회의의 종류와 구성)
- 제 7 조 (소 집)
- 제 8 조 (성립 및 결의)
- 제 9 조 (부 의)
- 제 10 조 (의 결)
- 제 11 조 (이사의 의무)
- 제 12 조 (이사회 평가제도)
- 제 13 조 (위 임)
- 제 14 조 (의 사 록)

부 칙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상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에이치엘클레무브 이사회 (이하 "이사회"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직무와 권한)

1.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.
2.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3.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 4 조 (구성)

1.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2.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안할 수 있다. 그러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.
3. 이사회는 제반 업무를 지원하는 간사 부서를 두며 간사 부서는 자금팀이 된다.

제 5 조 (의장)

1. 이사회는 의장은 대표이사가 한다.

2.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의장이 된다.

제 6 조 (회의의 종류와 구성)

1.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
2.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 회 개최한다.
3.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7 조 (소집)

1.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회의일 5 일 이전에 모든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 통지하여 소집한다.
2. 단, 이사 및 감사 전원의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에, 통지를 생략하거나 통지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.

제 8 조 (성립 및 결의)

1.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
2. 다만, 상법 제 397 조의 2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) 및 동법 제 398 조 (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,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해야 한다.

제 9 조 (부의)

1. 이사회 의안은 각 이사가 발의 한다.

제 10 조 (의결)

1.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- (1) 상법상 이사회 의결사항
 - 1) 주주총회의 소집
 - 2) 영업보고서의 승인
 - 3)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, 이익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 및 그 부속 명세서 승인
 - 4) 사채의 발행
 - 5) 신주/전환사채/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
 - 6) 주식의 양도 승인
 - 7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또는 부여 취소
 - 8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- 9)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, 대규모 재산의 차입, 지배인의 선임 또는 지점의 설치/이전 또는 폐지 등의 업무집행
 - 10)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자본 전입의 승인
 - 11) 중간 배당의 승인
 - 12)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사항
 - 13) 기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

- (2)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
 - 1) 연간사업계획의 승인
 - 2) 최초사업계획의 중대한 수정 또는 변경
 - 3) 회사 자산에 대한 담보설정
 - 4) 자회사 자본 불입 및 차입을 위한 보증 승인
 - 5) 중요한 기술, 특히 기타 지적재산권의 양도 또는 사용권 부여
 - 6) 자본(금) 증가에 관한 사항
 - 7)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다. 기타 법령 또는 정관,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각 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
 - 8)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. 다만, 이사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9) 회사 부패방지 방침의 승인

2. 이사회에 다음 사항을 보고한다.

- (1)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- (2)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- (3) 준법지원인의 회사의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결과
- (4) 연간 ESG 경영 활동에 대한 계획 및 이행 성과
- (5)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
- (6) 회사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 성과
- (7) 상법 및 관련 법령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

제 11 조 (이사의 의무)

1. 이사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영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도모 해서는 안 된다.
2. 이사는 사전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 3 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.
3. 이사는 이사회 승인이 없는 한 자기 또는 제 3 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.
4.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 한다.
5. 이사는 주기적으로 부패방지 준수에 관한 서약서를 서명 · 제출한다.

제 12 조 (이사회 평가제도)

1. 회사는 장기적인 성장 발전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이사회 운영의 평가제도를 도입 할 수 있다.

제 13 조 (위임)

1.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 14 조 (의사록)

1. 이사회 간사는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.
2.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,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및 감사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3. 의사록 원본 및 사본은 이사회 간사부서에서 보관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제 정 시 행 일) 이 규정은 2009 년 3 월 1 일부로 제 정 시 행 한 다.

제 2 조 (개 정 시 행 일) 이 규정은 2021 년 10 월 6 일부로 개 정 시 행 한 다.

제 3 조 (개 정 시 행 일) 이 규정은 2023 년 7 월 26 일부로 개 정 시 행 한 다.

제 4 조 (개 정 시 행 일) 이 규정은 2024 년 2 월 5 일부로 개 정 시 행 한 다.